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신구조문대비표

2011. 3. 1. 개정 판 (시행 2011. 3. 1.) → 2016. 2. 29. 개정 판 (시행 2016. 3. 1.)

바뀜 1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228/compare?from=581&to=582> · 내려받은 때 2026. 10. 22. 오후 2:13:23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71조(신학전문대학원위원회) 본 대학원에 신학전문대학원위원회를 둔다. 신학전문대학원위원회는 원장, 교학부장, 신학과장, 삼육대학교 신학과장, 삼육대학교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무실장, 본 대학원 교수 중 1인 등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일상적인 학사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71조(신학전문대학원위원회) 본 대학원에 신학전문대학원위원회를 둔다. 1. 구성: 신학전문대학원위원회는 신학대학원장(위원장), 교학부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재무실장, 신학대학장, 신학대학원담당자(1) 등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일상적인 학사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2. 기능: 다음 각 항목들을 심의한다. <신설 2016-02-29> ≡ 주~~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 부속기~~관~~치 부설연구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 학~~사~~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 입학~~과~~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 계절학~~기~~운영에 관한 사항 ≡ 학생지도~~에~~한 사항 ≡ 기~~타~~신학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신학전문대학원위원회) 본 대학원에 신학전문대학원위원회를 둔다.

1. 구성: 신학전문대학원위원회는 신학대학원장(위원장), 교학부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재무실장, 신학대학장, 신학대학원담당자(1) 등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일상적인 학사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기능: 다음 각 항목들을 심의한다.

- ≡ 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 ≡ 부속기~~관~~ 설치 부설연구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 ≡ 학사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 ≡ 입학~~과~~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 ≡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
- ≡ 학생지도~~에~~한 사항
- ≡ 기타 신학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